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6] [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156호, 2022.12.26, 일부개정]

대학원행정실 033-640-2959

제8장 학위논문의 심사과 구술시험

제30조(논문계획서)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3차 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의 7차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까지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의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1년 이내 단축하는 석·박사 통합과정은 5차 학기부터 논문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제출 후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계획서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가 변경되는 경우,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학위논문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제32조(학위논문제출자격)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의 보충과목 이수자는 인정학점외의 부족학점을 위 학점에 가산 취득하여야 하며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은 어학능력 검증을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표절검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33조(학위논문 심사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석사과정

가.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

나. 학위논문 추천서 1부

다. 논문요약서 1부

라. 학위청구논문 3부

마.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가.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나. 학위논문 추천서 1부

다. 논문 요약서 1부.

라.연구실적서 1부 및 연구실적 논문별쇄본 1부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1부

마. 이력서 1부

바. 학위청구논문 5부

사. 기타 필요한 서류

제34조(논문편수) 석사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참고논문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및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논문작성 언어) ①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논문체제 및 작성)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해당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8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을 외부인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9조(학위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와 진행을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40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 금지) 위촉된 심사위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41조(학위논문의 심사) ① 석사학위논문심사는 1회 이상으로, 박사학위논문심사는 3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②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는 박사학위논문심사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2.26.>

③ 학위논문심사용 논문은 지정된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하며, 공개발표회는 논문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④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지정된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다만, 공개발표회는 본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의2(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① 예능계열은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위청구논문을 다른 실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22.7.1.>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

제42조(학위논문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당해 학기 최종심사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구술시험)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20.7.30.>

제44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제45조(구술시험평가 및 판정) ①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구술시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논문판정) 논문심사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 또는 “부” 판정한다.

제47조(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표절검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결과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②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0.>

부칙 <제2156호, 2022.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